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의 제반 영향과 시사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자 및 자영업자 수가 늘고 이직 횟수와 퇴직일시금의 지급빈도가 증가하면서 소액화된 퇴직소득이 일상적인 소비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은퇴자산 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기존 개인퇴직계좌(IRA)의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퇴직계좌에 비해 가입자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산축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자들의 영업이 개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며,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은퇴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확산될 것임. 아울러 근로자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금융상품다양화 등의 변화가 예상됨.

■ 노동시장이 갈수록 유연해짐에 따라 이직 시에도 제한 없이 퇴직급여를 이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개인퇴직계좌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함.

- 자영업자 비중 증가, 이직률 증가, 근속년수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 횟수가 증가하고 소액화되면서 노후소득으로 축적되기보다는 일시금의 형태로 소진될 가능성이 커짐.
-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는 이직하는 사업장이 퇴직금이나 DB형 제도를 운영할 경우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능했고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추가납입도 제한되었음.
- 특히 전체 취업근로자 중 약 33%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가입제한으로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에 비해 가입자 접근성이 높고, 자산축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보완된 제도로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근로자들의 주요한 은퇴소득 축적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자영업자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사업장 제공 퇴직연금¹⁾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추가납입이 허용되면서 신규 적립금은 물론 기존 가입자의 잉여자금 유입이 가속화되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1985~2007년 동안 미국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A²⁾의 적립금 연평균 성장률은 14.5%로 DC형 10.2%, DB형 5.5%를 크게 상회하며, 적립금 규모 면에서도 IRA는 2010년 말 기준 27%로 DC형 25%, DB형 14%보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퇴직 시 퇴직소득의 의무이전과 근로자 개별 설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의무이전 조항은 적립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IRA 적립금 증가액 중 '타계정으로부터의 이전(rollovers)'을 통한 유입액 비중이 평균 95%로 '가입자의 자발적 납입(voluntary contributions)' 비중 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표 1〉 「근퇴법」 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차이점

구분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형 퇴직연금(IRP)
설정 및 운영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확정급여(DB)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 자기부담금 납입 -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설정 가능
추가납입	- 신설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 - 퇴직 시 퇴직계좌 내 운용자산의 현물이전을 통한 퇴직급여의 수령 가능
설정절차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별 동의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의 투자자 교육 실시 -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비용의 사용자 부담
이직 시 급여의 이전	- 기타의 경우 임의적 이전	-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여야함.

자료: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조.

1) 사업장 제공 퇴직연금(employment-based pension)은 사업자가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DB · DC형 퇴직연금을 의미함.
 2)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 IRA는 우리나라의 개정 IRP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업장 제공 퇴직연금(employment-based pension)이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을 지칭하는 개념임.

■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은 퇴직연금 사업자(보험사 등)의 영업전략과 상품설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퇴직연금 선택권이 사용자에서 가입자 개인으로 완화되면서 퇴직연금의 영업전략이 기관 중심에서 개인고객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임.
- 둘째, 접근성 제약으로 미루어졌던 개인 가입자들의 잠재수요를 실제 퇴직연금 구매로 이끌어내기 위해 은퇴설계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임.
- 셋째,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형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가입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투자자 교육과 운용실적 고지 및 선관주의 의무가 강화될 것임.

■ 거시적 측면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은 가입자, 정부, 금융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가입자 입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이 퇴직소득의 통산장치 역할을 하게 되어 고용상황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은퇴자산 축적이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노후소득확보가 강화될 것임.
- 둘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가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임.
 -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재원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는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임.

〈표 2〉 개인형 퇴직연금(IRP) 도입의 제반 영향

가입자	정부	사업자 또는 금융산업
• 노후소득보장의 강화 • 안정적인 노후대비	• 재정 부담 완화 • 고령화리스크 대응 • 연금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 은퇴관리자 역할 증대 • 금융산업 성장 견인

자료: 보험연구원(2011),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류건식 외.

- 셋째, 다양한 은퇴서비스 및 상품개발이 촉진되고 자산축적에서 연금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활발한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임.
 - 자산축적 단계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인 투자형 상품과 유사하나, 인출 단계에서는 투자형 상품보다 다양한 지급방식과 선택방안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이에 따라 연금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지급옵션 설정 및 지급보증 설계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도 촉진될 것임. **kiri**